

[19] 1996年度 行政事務監查報告書

목 차

1. 감사의 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대상기관

4. 감사실시경과

 가. 감사반 편성

 나. 감사일정

5. 감사결과

 가. 주요감사실시내용

 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운영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1997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함은 물론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케하여 군민을 위한 군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있음.

2. 감사 기간

1996. 12. 2 ~ 12. 7(6일간)

3. 감사대상기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3항 제1항과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 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

위원회 선정기관	본회의 승인기관
가. 군 본청 나. 보건소 다. 농촌지도소 라. 읍·면 마. 환경사업소 바. 상수도사업소	“없 음”

4.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반 편성

○ 감사위원장 이상원 의원

○ 감사위원

이홍규 의원, 박영원 의원,

홍재룡 의원

유재원 의원, 김광배 의원,

김영안 의원

○ 사무보조자

전문위원 홍영섭, 지방행정주사보 김태성, 속기사 2명

나.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日 時	監查對象部署	監查場所	備 考
12월 2일(월)	주내면, 회천읍, 은현면	읍·면회의실	
12월 3일(화)	남면, 광적면, 백석면	해당 면 회의실	
12월 4일(수)	장흥면, 재무과, 건설과, 사회진흥과, 지적과	면 회의실 의회 본회의장	
12월 5일(목)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산업과, 산림과, 농촌지도소 축산과	의회 본회의장	
12월 6일(금)	도시과, 주택과, 지역경제과 상수도사업소, 가정복지과 사회과, 보건소	의회 본회의장	
12월 7일(토)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의회 본회의장	

5. 감사결과

가. 주요 감사실시 내용

對象部署	主 要 監 査 事 項
기획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정시책 평가 및 심사분석 사항 (읍·면 행정실적 종합평가 포함) 2.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3. 예산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4. 행정협의회 운영, 자치경영, 감사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 사항
문화공보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정 홍보시책 추진사항 2. 국민관광지 운영실태 3. 지방문화 예술지도 및 육성실태 4. 문화재 보수 및 문화재 관리상태
내무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직 및 인사관리 사항 2. 읍·면 행정지도 감독사항 3. 공무원 사기양양과 비위근절과 민원행정 4. 법무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사회진흥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한 각종 공사 2. 새마을 단체의 지도육성 관리사항 3. 군민 체육진흥 및 청소년대책 4.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사항

對象部署	主 要 監 査 事 項
재 무 과	1. 지방세수 증대 및 지방세 징수사항 2. 공사입찰 및 계약사항 3. 세외수입원 발굴 방안 4. 공유재산 관리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지 적 과	1. 토지거래 허가 및 토지등급 조정에 관한 사항 2. 기타 필요한 사항
사 회 과	1.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2. 생활보호대상자의 관리와 영세민 관리 3. 식품, 환경위생업소에 대한 허가 현황 및 지도감독 사항 4. 의료보호기금 관리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환경보호과	1. 환경 보전업무 추진사항 2. 쓰레기처리 종합대책 추진사항 3. 배출시설 지도단속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가정복지과	1. 노인 복지업무 추진사항 2. 아동 복지업무 추진사항 3. 기타 필요한 사항
산 업 과	1. 소득증대 사업 추진사항 2. 농촌발전 종합대책 추진사항 3. 농지 전용허가 및 사후관리 사항 4. 농수산물 유통지원 및 추진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對象部署	主　要　監　查　事　項
축 산 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축산 진흥시책 추진 및 축산자금 융자사항 2.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유통관리 지도사항 3. 기타 필요한 사항
지역경제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장등록 및 무허가 공장에 대한 관리 실태 2. 법규 위반차량 및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사항 3.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사항 4. 자동차 등록현황 및 무허가 정비업소 단속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산 림 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림 훼손허가 및 사후관리 사항 2. 가로수 보식 및 식재관리 사항 3. 기타 필요한 사항
건 설 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공사 추진사항 2. 군도 개설 및 포장 추진사항 3. 하천관리 실태 및 불법사항 지도감독 사항 4. 농어촌 정주권 사업 추진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도 시 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토이용계획변경 추진사항 2.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및 지도감독 사항 3. 수도권 광역상수도 확대 추진과 기존 운영실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對象部署	主 要 監 査 事 項
주택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 허가 및 준공 현황 2. 불법 건축물 및 용도변경 사항 3. 국민주택, 아파트 관리사항 및 주택융자금 회수 사항 4. 농촌주택 및 변소개량 사업내역 5. 기타 필요한 사항
민방위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 및 직장 민방위대 편성과 지도감독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사항 ○ 교육 불참자에 대한 원인분석 사항 2. 재난방지 종합대책
보건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전지소, 진료소 설치현황 및 운영사항 2. 각종 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국민 보건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내역 4. 기타 필요한 사항
농촌지도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농민 기술지도 실적 및 향후 지도방향 2. 농민 후계자 육성 지도사항
위생환경 사업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생환경사업소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분뇨처리 시설 증설사업 추진사항)
상수도사업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수도사업소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읍·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원처리 사항 2. 각종 체납세 현황 3. 공사발주 현황 4. 상급기관 감사 현황 5. 주민불편 해소방안 6. 기타 필요한 사항

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기획감사실

가) 행정권 협의회 운영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와 같은 법 제142조에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 행정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조항에 의하여 구성하여 운영중인 행정권협의회가 운영실적이 저조할 뿐 아니라 양주군의회에서 건의안으로 채택된 서울 시내버스 회천~주내 연장 건의안, 양주~녹양간 송전선로탑 건설위치 변경 건의안, 경기북도 신설촉구 건의안등 3건의 건의안이 있었으나 행정권협의회 의안으로 상정되거나 협의된바 없으므로 협의가 가능한 서울 시내버스 회천~주내 연장 건의안에 대하여는 의정부권 행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감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시행하기 바람.

나) 각종 사업책정 및 예산편성시에는 양주군 중기지방재정 계획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주민의 수혜도와 성과 등을 세밀히 분석하여 추진하되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철저한 심사분석 등을 통해 각종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기바람.

다) 행정의 새로운 제도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창안제도의 제안 채택에 있어 '96년도에 총32건의 제안이 접수되어 심사하였으나 한 건도 채택된 제안이 없는 것은 향후 제안제도 모집시 제안자가 없는 등 창안제도의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됨. 앞으로는 창안제도의 성과와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다수의 공무원이 본 제도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채택된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하여 군정에 접목시켜 행정에 반영하고 채택되지 않은 제안에 대하여도 군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등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 문화공보실

- 가) 국민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군민의 수혜도와 예산 낭비 등을 감안하여 관광지 개발 계획수립시 기 민간투자로 개발한 백석면 기산리 지역의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파악 재 검토하고 도출시켜 관광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판단되는 남면 소재 감악산 개발계획 수립시 예산의 낭비 등이 없도록 검토 추진하는 등 국민관광지 개발사업 대상지 선정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나) 관내 유·무형 문화재에 대하여 예산 등의 부족을 이유로 관리가 미흡하니 유·무형문화재에 대하여는 예산지원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보수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3) 내무과

- 가) 찾아가는 신문고 운영은 1주일에 1회 또는 일과시간이 끝난 저녁시간을 이용하여 사전에 장소와 시간을 약속치 않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거나 해결코자 운영하는 제도이나 '96년도 방문 횟수가 10회에 전의사항이 총 68건으로 그중 22건만 해결하고 40여건은 추진 중인 것으로 볼 때 운영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니 앞으로는 본 제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나) 공무원 해외연수 실시에 있어 대상자의 대부분이 6급이상 공무원으로 5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기 실시한 해외연수에 대한 성과 등을 분석하여 앞으로는 가급적 본 제도의 성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하위직 실무자가 참여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시정하기 바람.

다) 군 또는 읍·면에서 10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는 한곳에만 너무 오래 있어 시야가 좁아지고 다양한 업무 연찬 숙지의 기회상실로 인하여 사기가 저하되고 있으니 장기근무자에 대하여는 공무원 사기앙양 차원과 다양한 업무숙지를 위한 순환보직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이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기 바람.

라) 민원 후견인제 실시제도는 잘 운영하면 바람직 한 제도이나 홍보부족 등으로 많은 민원인이 본 제도를 전혀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등 운영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됨으로 앞으로는 각종회의, 교육, 반상회 등을 통한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민원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람.

4) 재 무 과

가) 각종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시 마다 지적하였음에도 징수실적이 부진하고 특히 고액 체압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물건에 대하여 과감한 경매 및 공매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체납액이 일소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나) 양주군 일반폐기물 처리 계약 방법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 등을 통해 수의계약방법을 지양하고 일반 공개 입찰 등에 의한 계약을 하여 예산절감 및 완벽한 폐기물 처리를 하도록 수차례 걸쳐 촉구한 바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어 재 촉구하니 관계 법을 검토하여 시정토록 하기 바람.

5) 사회과

- 가) 남면 상수리 산81-1번지에 건립하는 장애자 복지회관은 도시형 업종의 공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 법을 검토하여 용도변경 될 수 있도록 하고 진입 도로가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차량 진·출 입시 교통사고의 발생 등이 우려되니 확장 또는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나) 영세민의 자활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2년 거치 2년 상환에 년리 5%로 읍자금 총 3억4,200만원중 '91~'92년도 분의 읍자금 회수실적이 극히 부진하니 회수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6) 환경보호과

- 가) 양주군 일반폐기물 쓰레기처리에 있어 백석면 오산리 쓰레기매립장이 만장되고 지역주민의 반입 결산 반대로 인하여 양주군의 전체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등 주민에게 피해가 있어 의회에서는 수차 그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한 바 있음에도 행정사무감사 당일까지 아무런 대책없이 무방비 상태로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함은 청소 행정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시급히 종합대책을 강구 추진하기 바람.
- 나) 백석면 오산리 매립장의 쓰레기 처리에 있어 침출수 처리 소홀로 인한 하천 및 인근 농지 토양오염이 우려되며 일일 복토 미 실시로 악취, 파리, 분진등 방지 대책이 전무하니 향후 침출수등 오염방지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다)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규격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나 아직도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치 않고 일반 용기를 이용 투기하는 사례가 다수 있으며, 또한 산업쓰레기 유입이 우려되고 특히 규격봉투 판매 실적이 부진한 것은 판매 과정 등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쓰레기 봉투 판매방법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일반용기를 이용한 쓰레기 무단투기와 산업쓰레기 유입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단속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라) '95년 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종량제 실시이후 쓰레기 봉투 값을 한번도 인상을 못해 쓰레기 처리비용이 매년 적자 누적되고 있는 것은 타 시·군과 비교시 상대적으로 우리 군의 쓰레기 봉투 값이 낮아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되니 타 시·군과 형평에 맞도록 인상 안을 검토하기 바람.

마)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 명예 감시원을 위촉 운영하고 있으나 당초 목적한 환경오염 방지 대책에 대한 활동과 실적이 극히 미비하고 조직 또한 부실하니 재정비하여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바) 쓰레기 처리시설인 매립장, 소각장의 위치 선정시 잦은 위치 변경으로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고 쓰레기 매립장의 위치 및 처리용량, 처리방법 등에 대해 계획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강구치 못하고 즉흥적이고 임기응변적으로 대처하여 주민 불신을 팽배시키고 있으며, 남면 매립장의 처리 용량 61,540t/일 을 29,200t/일 으로 계속 허위로 발표한 것은 주민을 기만한 행정으로 사실대로 밝히고 환경영향평가동 전문적인 기술 검토를 거친 후 시행해야 할 것이며 회천 소각장의 경우 1일 처리능력을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96t/일로 계획하는 것은 주민입장에서는 오해소지가 있으니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한 후 적극적인 설득과 홍보 등을 한후 추진하기 바람.

7) 가정복지과

가) 관내 어린이놀이터 관리 소홀로 시설이 노후화 되거나 고장난 것을 방치하고 있어 안전사고가 예상되니 놀이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 등을 통해 수리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을 확보 정비토록 하기 바람.

8) 산업과

가) 농지전용에 있어 '95~'96년도 농지전용허가 신청시 반려사유를 보면 집단농지 피해 우려, 인근농지잠식우려, 우량농지로 보존할 필요성 있음, 전용목적의 실현성 없음 등의 포괄적인 표현은 전체 농지와 민원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반려사유로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오로지 담당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존해야 하는 불합리한 사유로 인하여 오해의 소지가 많고 객관성이 없으니 반려 시는 위 내용이 아닌 세부적인 사항을 기재하여 반려토록 하는 등 앞으로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하여 민원인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보완 시정토록 하기 바람.

나) 보조농약 공급은 병·해충 발생시기에 맞추어 적기에 공급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대다수 농가가 자비로 농약을 구입하여 병·해충 방제를 실시한 후 농협에서 공급하므로 인해 사용치 못하고 영농회장 집이나 창고에 방치하는 사례가 있으니 공급방법을 개선토록 하기 바람.

다) 농기계 반값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과 지원 액이 읍·면간 상이하니 지원액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통일하여 읍·면간 형평을 맞추도록 하고 농기계 보관 공동창고가 당초의 목적과는 상이하게 마을공동사용이 아닌 개인의 농기계 보관 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고가의 농기계를 마을주변 및 농경지 등에 방치하는 등 관리소홀로 부식되거나 사용할 수 없는 농기계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라) 농가저온저장고는 산지농산물을 계획 출하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하였으나 홍보부족으로 극소수의 농가만 이용하고 있는 등 일부 농민들만 저온저장고를 하절기에만 사용하고 동절기에는 전혀 활용치 않고 있어 많은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많은 농가에서 수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9) 축 산 과

가) 축산물 수입 전면 개방을 대비하여 소 값 변동 등을 사전에 예측하기 위한 소 이표 장착 작업과 소 전산화 실적이 저조하여 가축사육두수 증감에 대한 정확한 통계 파악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소 값 파동을 대비할 수 없다고 판단되니 소 이표 장착과 전산화 사업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10) 지 역 경 제 과

가) 파주군 소재 대성여객 주식회사에서 의정부~관내 장흥면 석현리까지 1일 8회 (당초 노선신고시 4회 운행)까지 운행 중이던 벽지 노선버스가 '96년 8월 1일부터 일방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당일까지 운행을 중단하므로 써 이 지역 이용주민에게 많은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여 의회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운행이 재개되도록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현재 까지 운행되지 않고 있는 본 노선에 대하여 빠른 시일 안에 재운행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나) 서울 시내버스 회천~주내 연장 건의안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채택한 안임에도 관련 부서에서는 아무 조치 없이 관련기관의 선처만 바라고 있어 해당 지역주민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니 향후 의정부권 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운행이 연장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람.

다) 교통안전 시설 설치가 대부분 미흡한 바 경찰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안협의 및 시설설치 업무를 본 군에서 시설 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 등을 통해 업무가 이관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11) 산 림 과

가) 각종 산림 병·해충 방제가 약제 살포 적기를 맞추지 못하므로 피해가 가중되고 있으니 적기에 살포될 수 있도록 하여 산림 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되도록 시정하기 바람.

12) 건 설 과

가) 관내에서 실시하는 전체 공사 현장의 안전시설이 미비할 뿐 아니라 주내~가 납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동절기에 노면이 고르지 못해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교통체증의 현상이 있으니 조기애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하고 전체 공사현장에 대하여는 안전표시판, 훈스, 조명, 유도판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나) 도로개설이나 확장시 도로의 높이등 선형의 책정 잘못으로 인해 마을도로 진입이 어렵거나 인근주택의 피해가 예상되니 앞으로는 도로 개설이나 확·포장 공사시 현지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한 후 공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람.

다) 국도3호선이 평화로 의정부 경계에서 동두천 시계까지 본 군 중심부를 통과하는 도로에 가로등이 없어 타 지역보다 교통사고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늘고 있고 현재 1일 교통량이 60,000대로 통과차량이 날로 증가되는 추세로 보아 가로등 설치가 시급히 요망되니 관련 부서에서는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라)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60년대부터 소형, 대형관정이 농지 내에 설치되어 있으나 대부분 지하수의 수위 저하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관정에 대하여 지표수 및 오염물의 유입과 부식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심각할 뿐 아니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정도 당초 목적인 농업용수가 아닌 공업용수로 전용하여 사용되는 사례가 있는바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관정의 실태를 파악하여 사용치 않고 방치되어 있는 관정은 폐공 처리하여 지표수 및 오염된 수자원이 관을 통해 지하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 지하수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공업용으로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관정에 대하여는 관계 법에 의거 조치하는 등 개선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람.

13) 도 시 과

가) 본 군은 국토이용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자연공원법, 수도법등 각종 규제법령에 의해 지역개발의 제한은 물론 주민의 기초적인 경제활동마저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니 상급기관 및 관련 단체에 건의, 방문협조 등을 통해 제한규정을 최소화 하여 주민피해가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나) 개발제한구역내 거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민선자치단체장이 선출되면서 개발제한구역협의회, 주민연합 등이 주축이 되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각종 세미나, 회의 등에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이 참여하여 문제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실정이나 본 군에서는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향후 본 군에서도 해당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주민들의 불이익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람.

다) 회천읍 상수도급수지역에 물 공급 부족으로 인한 찾는 단수로 말미암아 급수 대상 가구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근본적인 상수도 급수대책을 수차 촉구 하였음에도 예비 저수물량이 1일 1,500톤을 확보한 것 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96~'97년도에 사업 승인을 득하고 준공을 앞둔 아파트세대가 1,020호로 볼 때 물부족 현상이 날로 증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당초 계획한 광·백 상수도 여유물량 700톤과 보조수원공 개발,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 등이 지연되고 있어 상수도 급수문제가 향후 심각하게 대두 될 것으로 예상되니 신규아파트 건립을 지양하고 관련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상수도 급수 대책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기 바람.

라) 관내 상수도 급수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물 공급 대책과 아울러 실태를 정확히 파악 자연부락 단위로 간이상수도를 설치 급수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바람.

마) 관내 체불용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년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14) 주 택 과

가) 농촌주택개량 대상자의 융자금 지급 시기가 건축물이 준공된 후 지급하므로 어려운 농촌경제를 감안하여 건축진도에 따라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 개선하기 바람.

나) 폐기지프로젝트마을 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에 있어 기존 노후주택 소유자로 기존 농민이나 농업경영인 또는 전업농 등을 대상으로 선정토록 되어 있음에도 일부 대상자 선정이 지침에 적합치 않게 적용된 사례가 있으니 앞으로는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15) 민방위 재난 관리 과

가)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시 응소실적이 부진하고 민방위 장비 보관실태가 불량하니 재 정비토록 하여 유사시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에 철저를 기하고 민방위교육 비상소집 훈련시 응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바람.

16) 농촌지도소

가) 농업경영인은 우리 농촌을 이끌어 갈 지도자를 양성함은 물론 전업 농으로 육성하여 타 농가에 귀감이 되고 신 영농 기술보급 및 농촌발전을 위해 대부분 열심히 일하고 있으나 일부 농업경영인은 영농실패로 인하여 타 지역으로 전출이나 타 업종에 취업하고 행불자가 발생하는 등 당초 목적과는 거리가 먼 농업경영인이 있으니 앞으로는 종합적인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부실 농업경영인은 과감히 정리하기 바람.

17) 邑·面 공통 지적사항

가)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철자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농촌가로등과 도시 가로등이 수리비 등의 부족을 이유로 길게는 수개월씩 고장난 채로 방치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니 각 읍·면에서는 가로등 및 보안등의 수리 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고장난 등에 대하여 신속한 수리를 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설계 미흡

읍·면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의 설계시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읍·면의 담당직원의 설계경험부족 및 업무미숙, 또는 업무과다로 인하여 담당직원이 설계치 않고 시공 예상업자에게 설계를 하도록 하여 설계금액 과다계상 및 시공업자와의 유착등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향후 군의 자문 등을 통해 자체에서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기 바람.

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 실적 부진

체납된 각종 지방세 징수부진에 대하여는 매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하여 지적하였음에도 징수실적이 극히 부진하니 적극적인 채권 확보 또는 매각의뢰 등을 통해 다각적인 징수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라) 불법 건축에 대한 구제방안 강구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고발, 철거 등을 지양하고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민원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바라며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후 타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건축물을 선별하여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바람.

마) 공동이용시설 운영 관리 철저

공동 이용 시설인 마을 회관, 복지회관 등의 활용 실적이 저조하고 당초 목적대로 사용치 않고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 있으니 앞으로는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여 마을회관 및 복지회관 등의 활용을 제고와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바) 하천부지등 점·사용료 징수실적 저조 및 관리 소홀

하천부지, 공유수면, 도로 점용부지등 사용료 징수율이 저조하고 허가 목적외 사용하는 사례가 있으니 앞으로는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허가목적외로 사용하는 경우가 없도록 관리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사) 민방위 교육 출석 실적 저조

민방위 교육훈련 실적중 비상훈련 소집 응소율이 매우 저조하니 향후에는 응소율 제고 방안을 강구하여 비상훈련 교육소집시 많은 대원이 응소토록 조치하기 바람.

아) 농지전용신고 및 건축신고에 대한 주민 홍보 철저

농지전용 신고를 득한 후 행정지도 및 홍보 부족으로 건축신고 절차 미숙지로 인한 일부 주민들이 무허가 건물로 고발되어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므로 농지 전용신고와 동시에 건축신고가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 시행하기 바람.

18) 회 천 읍

가) 농업용 시설로 설치한 관정관리 소홀

농업용 시설로 관내 설치된 대·소형 관정 상당수가 폐공되어 이로 인해 수질이 오염되고 있고 일부 관정은 목적외 사용하는 것이 있으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19) 주 내 면

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지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주민의 피해 의식과 불편사항을 고려하여 고발 등을 가급적 지양하고 사전 행정지도를 통해 예방 위주 행정을 하되 불가피 원상 복구등 조치를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조치하기 바람.

20) 은 현 면

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미흡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와 업무보고가 미흡하고 감사자료 제출이 전반적으로 소홀하니 앞으로는 관계 법규 숙지와 직원교육을 강화하여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람.

21) 백 석 면

가) 건축신고시 임의조건 부여 지양

건축신고시 오수정화조 설치조건 부여시 실무자가 임의적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있어 오수 정화조 설치로 인하여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조건부여시 반드시 관계 법에 근거하여 부여하여 임의조건 부여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기 바람.

22) 장 흥 면

가) 하천부지 점용 사용료 및 공유수면 점용료 부과 소홀

서울 강남구 방배2동 980-31 남수길에게 1988년 9월 5일자 점용 허가한 후 서울 종로구 인사동 216번지 정용제에게 양도, 양수하면서 감사 당일까지 '94년도의 사용료는 체납되고 감사자료에 '95. '96년도 분은 사용료 부과 자체를 누락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 건에 대하여는 개인간의 이해 관계로 인한 분쟁이 발생 할 소지가 있고 또한 지역주민의 반대 등을 감안하여 공익사업이 아닌 것은 관계 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허가 또는 취소토록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나) 건축신고시 임의조건 부여 지양

건축신고시 오수정화조 설치조건 부여시 실무자가 임의적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있어 오수 정화조 설치로 인하여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조건부여시 반드시 관계 법에 근거하여 부여하여 임의조건 부여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기 바람.